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9504호, 2023. 6. 20., 일부 개정)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투자조건부 용자 계약, 투자목적 회사의 설립 및 운용,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투자 규제 개선 등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투자실적의 범위에 조건부지분전환계약 반영(안 제4조제1호)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을 통한 투자를 전문개인투자자의 투자실적 범위에 반영

나. 조문 정비(안 제4조제2호, 제6조제3항·제4항, 제13조제2항, 제23조제1항·제2항·제5항, 제30조제1호 등)

-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명칭을 ‘벤처투자회사’로 변경
- 2)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결격사유에 적용되는 금융관련법령의 범위 명시 및 조문 정비
- 3) 벤처투자회사의 등록 요건 중 차입 비중(20% 미만) 산정기준 명확화
- 4) 유한(책임)회사의 벤처투자회사 등록 허용에 따른 용어 정비

다. 개인투자조합의 공시기준(안 제12조의2)

공시의무 대상이 되는 개인투자조합의 기준을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의 출자금의 합이 20억원 이상인 경우로 금액기준을 제시
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겸영 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 완화(안 제17조제3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겸영 창업기획자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서 신기술 사업투자조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는 것을 허용

마. 특수목적펀드의 출자·투자의무 완화(안 제35조)

- 1) M&A, 세컨더리 등 특수목적펀드의 창업·벤처기업 투자의무 미적용
- 2) M&A 목적 펀드의 상장 법인 투자제한 비율을 20%에서 60%로 완화
- 3) 투자의무를 달리 정할 수 있는 M&A, 세컨더리, 지분유동화 등 특수 목적펀드의 범위 명시

바. 투자목적회사 설립 및 재산운용 기준(안 제35조의2)

- 1) 투자목적회사의 창업·벤처기업 투자의무 비율을 60%로 규정
- 2) 투자목적회사 투자비율 산정기준 명확화
- 3) M&A 목적 펀드의 투자목적회사 출자 비율을 60% 이상으로 완화
- 4) M&A 목적 펀드가 출자한 투자목적회사에 피인수·합병 법인 임원 및 대주주 등 지분 참여 허용
- 5) 단일 기업·사업 투자, 차입한도 등 투자목적회사의 차입 및 재산운용 세부사항 명시

사. 투자조건부 용자 계약의 참여 주체 및 신고사항(안 제44조의2)

- 1) 투자조건부 용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 기금관리기관

및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명시

2) 투자조건부 용자를 받을 수 있는 법인의 범위에 코넥스 상장 법인 추가

3) 투자조건부 용자기관의 분기별 신고사항 규정

4) 용자기관과 심사자료를 공유하는 투자기관 범위에 벤처투자조합

주요 결성주체와 개인투자조합 추가

아. 투자조건부 용자에 관한 자료의 관리 업무 위탁 근거 마련(안 제48조 제2항제10호)

한국벤처투자 위탁 업무에 투자조건부 용자 신고자료 관리 추가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8. 23. ~ 10.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가목 및 다목 중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각각 “조건부지분인수계약 또는 조건부지분전환계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나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벤처투자회사

제6조제3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12조제4항제5호 및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6. 「기술보증기금법」
7.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8. 「보험업법」

9. 「산업발전법」
10. 「상호저축은행법」
11. 「새마을금고법」
12. 「신용보증기금법」
1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4. 「신용협동조합법」
15. 「여신전문금융업법」
16. 「은행법」
17. 「외국인투자 촉진법」
18. 「외국환거래법」
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장에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개인투자조합의 공시) 법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억원을 말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제6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아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벤처투자회사

제17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3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에 해당하는 창업기획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가. 제16조제2호가목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나. 「산업발전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6조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참여하면서 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제23조제1항제2호 중 “차입금이 납입자본금의”를 “납입자본금에서 차지하는 차입금의 비중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3조제2항”을 “제6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발행주식 총수를”을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 총수를”로, “주식이”를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로, “수가”를 “수 또는 출자지분이”로, “발행주식 총수의”를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 총수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발행주식 총수”를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 총수”로 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요주주”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주주로서”를 “주요주주”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출자금 총액의 60퍼센트 이상을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투자하는 목적으로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의 경우에는 0퍼센트를 말한다. 제35조제5항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출자금 총액의 60퍼센트 이상을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투자하는 목적으로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

⑥ 법 제51조제4항단서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은 법 제51조제4항제2호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60퍼센트를 말한다. 다만, 2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⑦ 법 제5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투자조합”이란 법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출자금 총액의 60퍼센트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투자하는 목적으로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을 말한다.

1.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대한 인수·합병
2.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기발행한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 교환사채 및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출자지분의 인수, 조건부지분인수계약 또는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의 인수, 중소기업이 개발하거나 제작하며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

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 지분의 인수

3. 다른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유한책임조합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유한책임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인수
4. 다른 벤처투자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 지분 인수
5. 다른 벤처투자조합 및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①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60퍼센트를 말한다. 다만, 출자금 총액의 60퍼센트 이상을 제35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투자하는 목적으로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설립하는 투자목적회사의 경우에는 0퍼센트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투자 비율 산정시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할 것. 이 경우 “벤처투자회사”는 “투자목적회사”로 본다.

③ 법 제5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60퍼센트를 말한다.

④ 법 제51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인수·합병되는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임원 및 대주주를 말한다.

⑤ 법 제51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한 금융기관으로서 출자전환 등을 한 자

를 말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인 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수와 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주주 또는 사원의 수를 합산한 수가 49인 이내여야 한다.

⑦ 법 제51조의2제4항에 따라 투자목적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차입 및 재산의 운용을 하여야 한다.

1. 단일 법인 또는 단일 사업 등에 대한 투자(투자금액의 전액을 한꺼번에 투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2. 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하려는 벤처투자조합은 조합원의 총 지분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투자목적회사의 차입금액은 투자목적회사 자기자본의 4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4.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하거나, 투자목적회사가 차입 또는 청산을 할 경우에는 법 제50조제1항 또는 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
5.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영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 운영상황에 관한 사항을 보고할 때 투자목적회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8장의 제목 “보칙”을 “투자조건부 용자”로 한다.

제8장에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투자조건부 용자 계약) ① 법 제70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별표 1의 기금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70조의2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신기술사업금융회사를 말한다.

③ 법 제70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

④ 법 제70조의2제3항에 따라 투자조건부 용자 계약을 체결한 용자기관은 매 분기가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투자조건부 용자를 받은 법인, 계약 체결일, 만기일, 용자금액, 이율 등 용자조건
2. 용자기관의 배정주식수, 신주발행가액, 신주배정일, 용자기관이 인수한 주식의 종류 및 수
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⑤ 법 제70조의2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5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2.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창업기획자
3. 법 제6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업자
4. 개인투자조합

제9장의 제목 “벌칙”을 “보칙”로 한다.

제48조제2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법 제70조의2제3항에 따른 투자조건부 용자에 관한 신고 자료의 관리

제5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장 벌칙

별표 2 제2호마목 위반행위란 마목 중 “법 제32조”를 “법 제21조의2, 제32조”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위반행위란 바목 중 “법 제32조”를 “법 제21조의2, 제32조”로 한다.

제13조제4항제1호라목, 제5장 제목, 제23조 제목, 제23조제5항제3호, 제23조제7항제1호라목, 제23조제7항제1호마목2), 제24조 제목,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2항제2호, 제24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24조제2항제3호라목, 제24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제25조 제목, 제25조제2호마목, 제25조제2호바목, 제25조제3호 본문, 제25조제5호, 제25조제6호, 제25조제7호, 제25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제25조제9호가목, 제25조제9호나목, 제25조제10호, 제26조 제목, 제26조제1호가목, 제26조제1호나목, 제26조제2호가목 각 1) 외의 부분, 제26조제2호나목, 제26조제3호가목 본문, 제26조제3호나목3), 제26조제3호다목1)가), 제26조제3호다목2) 각 가) 외의 부분, 제26조제4호 단서, 제27조 제목, 제27조 제목 외의 부분, 제28조 제목, 제28조 제목 외의 부분, 제29조 제목, 제30조 제목,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2호, 제31조 제목, 제31조제1항, 제

31조제2항, 제32조 제목, 제35조제5항제1호 후단,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제2항제2호가목, 제41조제2항제2호나목2), 제47조제3항제4호, 제48조제2항제2호, 제48조제2항제3호, 제48조제2항제4호, 제48조제2항제7호, 제48조제2항제8호, 제48조제2항제9호, 제48조제4항제3호, 제48조제4항제4호, 제48조제4항제5호, 제48조제4항제8호, 제49조제4호, 제50조제12호, 제50조제13호, 제50조제14호, 제50조제15호, 제50조제16호 및 별표 2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②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5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③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다.

④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바목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벤처투자회사

⑤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2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단서 및 제5조제2항제5호나목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⑦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제13호, 제61조제2항제25호 및 제78조제2항제1호나목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⑧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이하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⑨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제1호의2 및 제59조제4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⑩ 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2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⑪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⑫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제13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8항제3호 및 제21조제2항제13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3항제8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⑮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12조의2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제12조의4의 제목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를 “(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로 한다.

⑯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⑱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8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⑲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7호 본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⑳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및 제15조제3항제3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㉑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㉒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제21호마목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사람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 6) (생략)

다. ~ 마. (생략)

제6조(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12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생략)

2.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일이 3개월 이상 지난 채무가 1천만원
을 초과하지 않을 것

3. (생략)

<신설>

1) 벤처투자회사

2) ~ 6) (현행과 같음)

다. ~ 마. (현행과 같음)

제6조(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현행과 같음)

<삭제>

2. (현행 제3호와 같음)

④ 법 제12조제4항제5호 및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6. 「기술보증기금법」

7.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8. 「보험업법」

9. 「산업발전법」

10. 「상호저축은행법」

11. 「새마을금고법」

12. 「신용보증기금법」

1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4. 「신용협동조합법」

15. 「여신전문금융업법」

16. 「은행법」

17. 「외국인투자 촉진법」

18. 「외국환거래법」

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신 설>

제12조의2(개인투자조합의 공시)

법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억원을 말한다.

제13조(창업기획자의 등록요건)

제13조(창업기획자의 등록요건)

① (생략)

② 법 제24조제2항제2호마목 및
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금융 관련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
한 법률」

1의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
한 법률」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
에 관한 법률」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4.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
한 법률」

5. 「기술보증기금법」

6.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7. 「보험업법」

8. 「산업발전법」

9. 「상호저축은행법」

10. 「새마을금고법」

11. 「신용보증기금법」

1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
에 관한 법률」

13. 「신용협동조합법」

14. 「여신전문금융업법」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6조
제4항 -----.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15. 「은행법」

<삭 제>

16. 「외국인투자 촉진법」

<삭 제>

17. 「외국환거래법」

<삭 제>

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삭 제>

19.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
률」

<삭 제>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2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
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④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상근 전문인력을 2명
이상 갖출 것. 다만, 법 제37조
제2항제2호사목 또는 아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등록이
취소된 날 또는 그 사유를 통
보받은 날부터 3년(등록말소
일부터 5년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등록말소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

1. -----

-----.

가. ~ 다. (생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학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으로서 「금융위원회의 설
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
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

라. -----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2. (생략)

<신설>

-----.

1.·2. (현행과 같음)

3. 「여성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4호의3에 따른 신기술사업 금융업자에 해당하는 창업기획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가. 제16조제2호가목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서 「여성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나. 「산업발전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6조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참여하면서 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3. (생략)

제5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제2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 ① 법 제3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생략)

2. 차입금이 납입자본금의 20퍼센트 미만일 것

② 법 제37조제2항제2호마목 및 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은 제13조제2항 각 호의 법률(이하 이 조에서 “금융 관련 법령”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④ (생략)

⑤ 법 제37조제2항제2호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이 가장

행위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5장 벤처투자회사

제23조(벤처투자회사의 등록요건)

① -----

-----.

1. (현행과 같음)

2. 납입자본금에서 차지하는 차입금의 비중이 -----

② -----

----- 제6조제4항 -----

-----.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

1. -----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 총수를 -----
----- 주식 또는 출

많고 그 주식 수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의 그 본인

2.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자

3.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해당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

⑥ (생략)

⑦ 법 제3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근 전문인력을 2명 이상 갖출 것. 다만, 법 제37조제2항제2호사목 또는 아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등록이 취소된 날 또는 그 사유를 통보받은 날부터 3년(등록말소일부터 5년을 초과하는 경우

자지분이 -- 수 또는 출자지분이 -----

--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 총수의 -----

2. -----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 총수--

--

3. -----
-- 벤처투자회사-----

--

⑥ (현행과 같음)

⑦ -----

-----.

1. -----

-----.

에는 등록말소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

가. ~ 다. (생략)

라. 학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신기술사업금융회사는 제외한다)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업무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회사(그 계열사 및 지점을 포함한다)에서 3년 이상 투자심사 업무(대출심사 업무는 제외한다)를 수행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마.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1) (생략)
- 2) 중소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수료했을 것

바. (생략)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

----- 벤처투자회사 -----

마. -----

1) (현행과 같음)

2) -----

----- 벤처투자회사 -----

바. (현행과 같음)

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운용 중인 총자산(자본금과
운용 중인 모든 벤처투자조합
의 출자 금액의 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제
외할 것

가. ~ 다. (생략)

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운용하는 벤처투자조합 출
자금액의 합이 해당 중소
기업창업투자회사 납입자
본금의 200퍼센트 이상인
경우 해당 중소기업창업투
자회사의 자본금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운
용 중인 총자산이 등록 당시
의 총자산보다 증액되거나 감
액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할 것

가. 증액된 경우: 증액분에 대
한 투자비율은 증액일을
기준으로 연차별로 각각
산정

나. 감액된 경우: 감액된 후의
총자산을 기준으로 투자비
율을 산정

-- 벤처투자회사-----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벤처투자회사-----

----- 벤처
투자회사 -----

----- 벤처투자회사-----

4. 벤처투자회사-----

가. -----

나. -----

제25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가. ~ 라. (생략)
마. 해당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특수관계인 중 계열회사
바. 해당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주요주주
3. 해당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주요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및 계열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행위. 다만,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신용공여 행위는 제외한다.
4. (생략)
5.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자산으로 타인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거나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

제25조(벤처투자회사의 행위제한)

-----.

1. (현행과 같음)
2.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 벤처투자회사-----

바. -- 벤처투자회사-----

3. --- 벤처투자회사-----

-----.
4. (현행과 같음)
5. 벤처투자회사-----

--

6.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명의로 제3자를 위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자금을 중개하는 행위

7.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자신이 투자한 업체로부터 차입 또는 자산 매각 등 투자행위에 수반되는 정상적인 거래관계 외의 거래를 통하여 자금을 받는 행위

8. (생략)

9.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대출로 인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가. 임원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변제해야 하는 대출잔여금액이 임원의 연간 급여액(근속기간 중에 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부터 지급된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급여를 말한다)을 초과함에도 그 임원에게 대출하는 행위

6. 벤처투자회사-----

--

7. 벤처투자회사-----

8. (현행과 같음)

9.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회사-----

가. ----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회사-----

나. 임직원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변제해야 하는 대출잔여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자본총계의 100분의 25를 초과함에도 임직원에게 대출하는 행위

10. 그 밖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거래상의 신용 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간접적 거래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26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 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나. ----- 벤처투자회사-----

---- 벤처투자회사-----

10. ----- 벤처투자회사-----

제26조(벤처투자회사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 -----

1. -----

가. 벤처투자회사-----

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다만, 최초의 주식 취득일
부터 6개월 이내에 인수·
합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한 주식을
최초의 주식 취득일부터 9
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
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조합의 업무집행조합
원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 참여하
는 경우

- 1)·2) (생략)
-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
라 설립된 조합 또는 회
사로서 그 업무가 중소기
업창업투자회사의 업무
로 적합하다고 중소벤처
기업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조합 또는 회사

다. 제25조제2호마목에 따른
계열회사의 주식등을 소유
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

나. -----

- 1)·2) (현행과 같음)
- 3) -----

----- 벤처투
자회사 -----

다. -----

- 1) -----

정하는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경영지배 성립일부터 6개월(주식이나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이익을 명백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중소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이 되는 날까지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이나 지분을 보유할 것

나) (생략)

2) 해당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주요주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가 지배하는 회사 중 다음의 해당 법령에서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주요주주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

가) -----

----- 벤처
투자회사-----

나) (현행과 같음)

2) --- 벤처투자회사---

인을 말한다.

제28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대 주주등의 행위제한) 법 제40조 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업무 운영상황 및 투자 실적 관련 보고 자료의 작성과 정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9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경영건전성 기준) (생략)

제30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직무 관련 정보 이용이 금지되는 주요주주) 법 제4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주요주주”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주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자
2.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제28조(벤처투자회사 대주주등의 행위제한) -----

----- 벤처 투자회사-----
-----.

제29조(벤처투자회사의 경영건전성 기준) (현행과 같음)

제30조(벤처투자회사의 직무 관련 정보 이용이 금지되는 주요주주) -----
----- 벤처 투자회사-- 주요주주”란 -----

-----.

1. -----

-----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
2. -----

략)

제35조(벤처투자조합의 투자 의무)

① (생략)

②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20퍼센트를 말한다. <단서 신설>

③·④ (생략)

⑤ 법 제51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투자비율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벤처투자조합”으로 본다.

2. (생략)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은 투자비율 산정에서 제외할 것

제35조(벤처투자조합의 투자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다만, 출자금 총액의 60퍼센트 이상을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투자하는 목적으로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의 경우에는 0퍼센트를 말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

1. -----

-----벤처투자회사-----

-----.

2. (현행과 같음)

3. -----

가. (생략)

나.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벤처투자조합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자산을 매수하는 벤처투자조합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

다. (생략)

4. ~ 6. (생략)

<신설>

<신설>

가. (현행과 같음)

나. 출자금 총액의 60퍼센트 이상을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투자하는 목적으로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

다. (현행과 같음)

4. ~ 6. (현행과 같음)

⑥ 법 제51조제4항단서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은 법 제51조제4항제2호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60퍼센트를 말한다. 다만, 2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⑦ 법 제5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투자조합”

이란 법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출자금 총액의 60퍼센트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투자하는 목적으로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을 말한다.

1.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대한 인수·합병

2.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기발행한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교환사채 및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출자지분의 인수, 조건부지분인수계약 또는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의 인수, 중소기업이 개발하거나 제작하며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 지분의 인수

3. 다른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유한책임조합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유한책임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인수

4. 다른 벤처투자조합이 보유하

<신 설>

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 지분
인수

5. 다른 벤처투자조합 및 개인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제35조의2(벤처투자조합의 투자
목적회사) ① 법 제51조의2제1
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비율”이란 60퍼센트를 말
한다. 다만, 출자금 총액의 60퍼
센트 이상을 제35조제7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투자하는 목적
으로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의 업
무집행조합원이 설립하는 투자
목적회사의 경우에는 0퍼센트
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투자 비율 산정시 제24
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용
할 것. 이 경우 “벤처투자회사”
는 “투자목적회사”로 본다.

③ 법 제51조의2제2항 각 호 외
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비율”이란 60퍼센트를 말
한다.

④ 법 제51조의2제2항제1호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인수·합병되는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임원 및 대주주를 말한다.

⑤ 법 제51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한 금융기관으로서 출자전환 등을 한 자를 말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인 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수와 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주주 또는 사원의 수를 합산한 수가 49인 이내여야 한다.

⑦ 법 제51조의2제4항에 따라 투자목적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차입 및 재산의 운용을 하여야 한다.

1. 단일 법인 또는 단일 사업 등에 대한 투자(투자금액의 전액을 한꺼번에 투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2. 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하려는 벤처투자조합은 조합원의 총지분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

하는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투자목적회사의 차입금액은 투자목적회사 자기자본의 400 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4.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하거나, 투자목적회사가 차입 또는 청산을 할 경우에는 법 제50조제1항 또는 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

5.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영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 운영상황에 관한 사항을 보고할 때 투자목적회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공모벤처투자조합의 등록 요건 등) ① (생략)
② 법 제6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공모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한다.

1. (생략)

제41조(공모벤처투자조합의 등록 요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벤처투자회사-----.

1. (현행과 같음)

2. 제23조제7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5명 이상 갖추는 것.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전문인력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투자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1) (생략)
- 2)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수료했을 것

다. (생략)

3. (생략)

제8장 보칙

<신설>

2. -----

-----.

-----.

가. 벤처투자회사 -----

나. -----

- 1) (현행과 같음)
- 2) -----

----- 벤처투자회사 -----

다.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제8장 투자조건부 용자

제44조의2(투자조건부 용자 계약)

① 법 제70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별표 1의 기금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70조의2제1항제8호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이란 신기술사업금융회사를 말한다.

③ 법 제70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

④ 법 제70조의2제3항에 따라 투자조건부 용자 계약을 체결한 용자기관은 매 분기가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투자조건부 용자를 받은 법인, 계약 체결일, 만기일, 용자 금액, 이율 등 용자조건
2. 용자기관의 배정주식수, 신주 발행가액, 신주배정일, 용자기관이 인수한 주식의 종류 및 수
3. 그 밖에 중소기업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⑤ 법 제70조의2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9장 벌칙

제47조(보고와 검사) ①·② (생략)

③ 법 제7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3. (생략)
4.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중요 사항 변경 등록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생략)

제48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

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5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2.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창업기획자
3. 법 제6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업자
4. 개인투자조합

제9장 보칙

제47조(보고와 검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3. (현행과 같음)
4. ----- 벤처투자회사-----

5. (현행과 같음)

제48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

탁) ① (생략)

② 중소기업부장은 법 제 7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벤처투자에게 위탁한다.

1. 삭제

2. 법 제9조, 제12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37조제1항 및 제50조제1항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자료의 관리

3. 법 제11조, 제22조, 제36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62조제1항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등록의 취소 등 행정처분에 관한 자료의 관리

4. 법 제16조, 제31조, 제44조 및 제54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결산서에 관한 자료의 관리

5. 6. (생략)

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2. -----

-- 벤처투자회사-----

3. -----

----- 벤처투자회사 -----

4. -----

----- 벤처투자회사 -----

5. 6. (현행과 같음)

7. 법 제33조, 제35조, 제46조 및 제48조에 따른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지위 승계 및 등록 말소에 관한 자료의 관리

8. 법 제36조제2항, 제49조제2항 및 제6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창업기획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임직원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한 제재조치에 관한 자료의 관리

9.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경영실태 조사에 관한 업무

<신 설>

10. ~ 12. (생략)

③ (생략)

④ 중소기업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위탁한다.

1. 2. (생략)

7. -----

벤처투자회사-----

8. -----

벤처투자회사 -----

9. ----- 벤처

투자회사-----

10. 법 제70조의2제3항에 따른 투자조건부 용자에 관한 신고 자료의 관리

11. ~ 13. (현행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와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1. 2. (현행과 같음)

<p>3. 법 제37조제2항제4호에 따른 <u>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u> 전문인력 해당 여부의 확인 및 관리에 관한 업무</p>	<p>3. ----- <u>벤처투자회사</u> ----- ----- -----</p>
<p>4. 법 제44조 및 제54조에 따른 <u>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u> 및 벤처투자조합의 결산서 접수 및 확인에 관한 업무</p>	<p>4. ----- <u>벤처투자회사</u> ----- ----- -----</p>
<p>5. 법 제45조에 따른 <u>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u>의 공시 운영에 관한 업무</p>	<p>5. ----- <u>벤처투자회사</u> ----- ----- -----</p>
<p>6. · 7. (생략)</p>	<p>6. · 7. (현행과 같음)</p>
<p>8.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u>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u> 및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실적 및 업무 운용상황 등에 관한 보고의 접수 및 확인에 관한 업무</p>	<p>8. ----- <u>벤처투자회사</u> ----- ----- ----- -----</p>
<p>⑤ · ⑥ (생략)</p>	<p>⑤ · ⑥ (현행과 같음)</p>
<p>제4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소기업부장관(법 제76조에 따라 중소기업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p>	<p>제4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 ----- ----- ----- -----</p>

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1. ~ 3. (생략)
- 4. 법 제37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
- 5. (생략)

제50조(규제의 재검토) 중소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0년 8월 12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기준일의 전날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1. ~ 11. (생략)
- 12.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
- 13. 제24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비율 및 산정기준
- 14. 제25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
- 15. 제28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

- 1. ~ 3. (현행과 같음)
- 4. ----- 벤처투자회사-----
--
- 5. (현행과 같음)

제50조(규제의 재검토) -----

-----.

- 1. ~ 11. (현행과 같음)
- 12. ----- 벤처투자회사-----
- 13. ----- 벤처투자회사-----

- 14. ----- 벤처투자회사-----
- 15. ----- 벤처투자회사-----

<p><u>업투자회사</u> 대주주의 행위제한</p> <p>16. 제32조에 따른 <u>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u>의 등록 취소의 예외</p> <p>17. ~ 20. (생략)</p> <p><신설></p>	<p><u>사</u> -----</p> <p>--</p> <p>16. ----- <u>벤처투자회사</u></p> <p><u>사</u>-----</p> <p>--</p> <p>17. ~ 20. (현행과 같음)</p> <p><u>제10장</u> 벌칙</p>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

연 락 처

(044) 204 - 7711